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89
----------	-----

2023년 9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0일 윤영희 의원(찬성 46명)
2.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9월 1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윤영희 의원)

#### 1. 제안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 취약계층 및 아동과 모성,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당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12곳의 의사 인력은 정원 대비 15%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병원에서는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목 의료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의사 부족 문제의 장기화로 한때 입원 병동이 폐쇄되거나 병상 가동률이 24%에 그치는 등 공공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기도 함.

- 이에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공백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 시장의 책무로 추가하고자 함.
-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인력, 병상,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를 추가함(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에 ‘인력, 병상, 시설 등’을 명시함(안 제7조제2항 제3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2023. 8. 24.~ 2023. 8. 28.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공백 없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12곳의 시립병원 중 상당수가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시장에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의 책무를 부과하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에도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공공의료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	바. ----- ----- 제12조에

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사. ~ 자.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④ (생략)

제4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 자.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삭제>

보)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 (생략)
  -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 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 4. (생략)
- ③ (생략)

제7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1.·2. (현행과 같음)
-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 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 4.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2 검토의견

가. 시장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추가함(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법 제2조제1호)<sup>1)</sup>.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법 제2조제3호)<sup>2)</sup> 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6조제1항)<sup>3)</sup>.
-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 취약계층 및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sup>4)</sup>.
- 이에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서울시립병원을 운영 중임. 기능적으로는 일반종합병원 4개 기관, 전문질환 진료 병원(노인성질환 전문, 장애소아 및 청소년 전문, 장애인 구강 전문, 결핵전문) 4개 기관, 정신병원 4개 기관으로 분류됨.

1)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 5. <생략>.

2)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중략>.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 5. <생략>.

3) 「공공보건의료법」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4) 「공공보건의료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② ~ ④ <생략>.

< 서울시립병원 현황 >

명 칭	운영 형태	위 치	주요 기능
서울의료원	특수법인	서울시 중랑구	일반종합병원
동부병원	위탁운영	서울시 동대문구	일반종합병원
북부병원	위탁운영	서울시 중랑구	노인성질환 전문 진료
어린이병원	직접운영	서울시 서초구	장애 소아 및 청소년 전문 진료
서북병원	직접운영	서울시 은평구	결핵 및 노인성질환 전문 진료
은평병원	직접운영	서울시 은평구	정신과 전문종합진료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서울시 동작구	일반종합병원
서남병원	위탁운영	서울시 양천구	일반종합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의 구강 전문 치료
백암정신병원	위탁운영	경기도 용인시	정신질환자 전문 진료
축령정신병원	위탁운영	경기도 남양주시	정신질환자 전문 진료
고양정신병원	위탁운영	경기도 고양시	정신질환자 전문 진료

자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정보통계시스템

\* 자료: 서울특별시(2023. 03), 2023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p62.

-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sup>5)</sup>의 경우,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시립병원 자체의 낮은 브랜드 매력’ 등의 이유로, 만성적 충원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sup>6)</sup>.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8개 병원의 전체 의사 정원 확보율은 93%였고, 특히 서북병원은 71.9%로 매우 낮았음.

5) 2021년 서울시 내 공공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개소(서울대학교병원), 종합병원 9개소(경찰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적십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병원 8개소(서울지구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북부병원, 고양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요양병원 3개소(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보훈요양병원,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치과병원 3개소(장애인치과병원,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24개소임.

6)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0. 11. 30.)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립병원 의료진 고용형태와 급여체계 중심으로, 최종보고서, p6.



< 서울시립병원 의사 정원 확보율 >

(2019.12.31 기준)				
병원명	의사 정원	의사 현원	정원 확보율	비고
총계	855	795	93.0%	
어린이병원	18	18	100.0%	직영병원
서북병원	32	23	71.9%	직영병원
은평병원	25	25	100.0%	직영병원
서울의료원	249	255	102.4%	특수법인
보라매병원	411	371	90.3%	위탁병원
동부병원	50	40	80.0%	위탁병원
북부병원	18	16	88.9%	위탁병원
서남병원	52	47	90.4%	위탁병원

\*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0. 11. 30.)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립병원 의료진 고용형태와 급여체계 중심으로, 최종보고서, p6.

- 이에 서울시는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만성적인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공공 의료인력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21년 4월에 공공병원 의사 연봉을 최대 40% 인상하는 대책을 마련<sup>7)</sup>한 바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 치우개선 노력에도, 서북병원 감염내과·재활의학과 의사, 어린이병원·은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뽑는 자리에 단 한 명의 응시자도 지원하지 않았음<sup>8)</sup>.
- 이러한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때 공공의료의 공백

7) 자료: 강주현, 2021.04.12., “오세훈 지시에...공공병원 의사연봉 40% ↑ '최대 1억4500만원'”,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916571076982>

8) 자료: 최아리, 2021.05.10., “[단독] 서울시 산하병원 연봉 올려도 응급의학과 등 ‘지원 0명’”,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5/10/RIA7FHH4CRAA5MAD42HPOQ73TY/](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5/10/RIA7FHH4CRAA5MAD42HPOQ73TY/)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음. 관련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음.

< 시립병원 의사 부족 문제의 장기화로 공공의료의 공백 문제 발생 관련 여론 >

발표기관	보도일시	보도내용
연합뉴스 <sup>9)</sup>	2022.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이 정원 대비 15%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li> <li>•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서북병원의 경우에는 총원율이 65.6%(32명 중 21명), 은평병원은 47.6%(21명 중 10명)에 그쳤다.</li> <li>• 특히 2011년 1월 어린이발달센터를 개원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공공의료를 제공해왔던 은평병원의 경우 근무하던 소아정신과전문의 3명 모두가 자리를 비웠고, 거듭된 채용 공고에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현재는 기간제 의사 1명만을 고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li> <li>• 일부 병원은 영상의학과(은평병원)나 진단검사의학과(서북병원)와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의료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li> </ul>
서울신문 <sup>10)</sup>	2022.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부족 문제의 장기화로 시립병원들은 운영할 수 없는 진료과와 병상을 축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진료와 입원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li> <li>• 서울시와 시립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 서북병원과 은평병원의 22년 병상 가동률은 각각 24%, 39%에 그친다.</li> <li>• 동시에 시립병원들의 평균 의사 정원율은 64%인데, 그중 은평병원은 정원 21명의 절반도 못 채운 단 10명만이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li> </ul>
메디컬 투데이 <sup>11)</sup>	2022.0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은 지난 20일 제311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부족을 지적했다.</li> <li>•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아닌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장기적 대책 마련에만 몰두해서는 안되며 당장 임박한 코로나 감염병 재유행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을 함께 찾아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li> </ul>

9) 자료: 안채원, 2022.10.12., “서울 공공병원 의사 인력, 정원보다 15% 부족”,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2090800001>

10) 자료: 온라인뉴스팀, 2023.10.28., “윤영희 의원 “공공의료 확충한다지만 시립병원 병상가동률 24%”, 출처:서울신문

- 그런데 이러한 만성적인 공공보건의료의 공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인데,

< 2023년 8월 기준 서울시립병원의 의료인력 현황 >

(단위: 명)

연번	병원명	인력현황					
		정원	의사		정원	간호사	
			현원	결원		현원	결원
			충원율	결원율		충원율	결원율
전 체		865	760	△105	2,395	2,278	△117
			88%	-12%		95%	-5%
1	서울의료원	284	243	△41	798	723	△75
			86%	-14%		91%	-9%
2	보라매병원	423	399	△24	891	892	1
			94%	-6%		100%	0%
3	서남병원	57	42	△15	253	226	△27
			74%	-26%		89%	-11%
4	동부병원	51	39	△12	171	153	△18
			76%	-24%		89%	-11%
5	북부병원	18	13	△5	125	113	△12
			72%	-28%		90%	-10%
6	서북병원	32	20	△12	159	170	11
			63%	-38%		107%	7%

\* 자료: 서울시 공공의료추진단 제공(휴직자 미포함).

- 이는 현행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됨.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8500058>

11) 자료: 이재혁, 2023.07.22., “만성적인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부족…대책마련 시급.”, 출처 :메디컬투데이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353297939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에 ‘인력, 병상, 시설 등’ 을 명시함(안 제7조제2항제3호)

- 다음으로 안 제7조제2항제3호는 현행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내용에도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2제3호), 시장에게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4조제4항)<sup>12)</sup>.

12)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

-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시장이 매년 수립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짐(붙임 참조).
- 또한, 개정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이 시장에게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의무를 추가하는 조치만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도 ‘인력, 병상, 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또한 이를 통해 관련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6.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의료인의 확보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

### 3 종합의견

-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12곳의 시립병원 중 상당수가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시립병원 자체의 낮은 브랜드 매력’ 등의 이유로,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는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만성적인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21년 4월 공공병원 의사 연봉을 최대 40% 인상하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응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분야(감염내과·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가 태반이었음. 또한 이러한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때 공공의료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음.
- 이에 개정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현장의 의료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공공의료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의된 것인데 우선,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려는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책’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의 책무는, 현행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 또한, 시장의 책무에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과 ‘공공보건 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추가하는 조치만으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도 ‘인력, 병상, 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아울러 관련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회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89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0일  
발 의 자: 운영회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이은림,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46명)

## 1. 제안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 취약계층 및 아동과 모성,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당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12곳의 의사 인력은 정원 대비 15%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병원에서는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목 의료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의사 부족 문제의 장기화로 한때 입원 병동이 폐쇄되거나 병상가동률이 24%에 그치는 등 공공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기도 함.

- 이에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공백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 시장의 책무로 추가하고자 함.
-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인력, 병상,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를 추가함(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에 ‘인력, 병상, 시설 등’을 명시함(안 제7조제2항제3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보건의료자원의”을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u>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u></p> <p>가. ~ 마. (생략)</p> <p>바. 「<u>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u>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u></p> <p>사. ~ 자.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u>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 ----- <u>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u></p> <p>사. ~ 자.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③ <u>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4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 략)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 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생 략)

③ (생 략)

④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

제7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 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